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br>번 호 | 1468 |
|------------|------|

제출일자 : 2017.12.  
제출자 : 달성군수



##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기능으로 변경(안 제4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3)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8항
- (4)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8항
- (5)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7)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 (8)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3항
- (9)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7. 9. 29. ~ 10. 20.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이의신청·정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이의신청·정정에 관한 사항
5.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7. 영 제30조 및 제53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제4조(기능) -----<br>-----.   |
| 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 표준주택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 2.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이의신청 · 정정에 관한 사항                             |
| 4.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 4.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 이의신청 · 정정에 관한 사항                       |
| 5.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5.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 6.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6.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
| 7.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7. 영 제30조 및 제53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등에 관한 사항            |
| 8.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 9.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 9. ~ 12. (삭제)   |
| 10.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
| 1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
| 12.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   |

## 참고 1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17조"로 본다

#####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

1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21조"로 본다.

###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절차)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평가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誤記)의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0조(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절차)

-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은 표준주택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표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의 절차)

-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자(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기관"이라 한다)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산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산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